

이훈재  
7-2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문

1905년 《을사조약》은 당초부터 불법무효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준박사 김길신

여러분 !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파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아직도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파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을사조약》을 비롯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한 구조약들이 당시로서 《합법적》으로 체결되고 《유효》한것이였다느니 41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는 《실정법》에 기초한것이였다느니 뉘니하면서 심히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는과거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출발적기초로 되는 1905년 《을사조약》이 당초부터 불법무효한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1905년 《을사조약》은 당초부터 불법무효이다.

그 근거는 첫째로 《을사조약》이 무력적강제와 협박에 의하여 조작되였기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무력적강제와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이것은 국제법상 공인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여러분 !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당국자들은 아직도 과거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을사조약》을 비롯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한 구조약들이 당시로서 《합법적》으로 체결되고 《유효》한것이였다느니 41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는 《실정법》에 기초한것이였다느니 뉘나하면서 심히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출발 기초로 되는 1905년 《을사조약》이 당초부터 불법효한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1905년 《을사조약》은 당초부터 불법무효이다.

그 근거는 첫째로 《을사조약》이 무력적강제와 협박의하여 조작되였기때문이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무력적강제와 협박에 의하여

1 조약은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이것은 국제법

인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19세기중엽이후 우리 나라에 알려진 《만국공법》이나 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있는 《조약법에 관한 원조약》에는 나라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강제와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어떠한 법적효과도 가질수 없》으며 그러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있다.

(《고종태황제실록》 권지 46 317페이지

《해설 조약집》 1983년판 105페이지)

《을사조약》은 《만국공법》 제409장과 《조약법에 관한 원조약》 제51조, 제52조에 완전히 배치된다.

《을사조약》조각에서 일제의 무력적강제와 협박행위는 그 발기단계에서 이미 확정된것이였다.

일 제침략자들이 《을사조약》의 조각을 발기한것은 일찌기 로일전쟁때부터였다.

로일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04년 5월 30일 일제는 원로원회의와 내각회의들에서 장차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데 대한 《대조선방침》을 세우고 이듬해 4월에는 내각회의에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로써 《보호조약》초안까지 토의하였다.

그후 일제는 로일전쟁을 결속하자마자 10월 27일 내각회의에서 《한국보호권확립에 관한 각의 결정》으로

앞서토의한 《보호조약》초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조선주둔군 사령관에게 《을사조약》의 《만족한 성공》을 기하도록 《본건 착수이전에》 군대를 서울에 집결시킬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8권 제1책 526-527페이지)

이러한 사실들은 무력적강제와 협박의 방법은 그들이 《을사조약》의 발기단계에서 이미 계획한 확정안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을사조약》조작에서 일체의 무력적강제와 협박은 그 교섭단계인 《회담》때부터 로골화되였다.

《회담》에 앞서 일체는 우선 서울에 막대한 무력을 끌어들였다. 당시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휘하에는 후비보병 2사단과 국민보병, 수비대, 헌병대 그리고 룡양전선에서 철수하는 군대까지 배속되어있었다.

이처럼 막대한 무력을 등대고 1905년 11월 10일 서울에 기여든 이또는 조선주둔군 사령관에게 군대와 수비대, 헌병, 경찰 무력을 동원하여 서울을 2중 3중으로 겹겹히 포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병련대와 포병을 서울 시내에 끌어들이고 그 군용을 정비하여 온성안을 위압》하는 한편 궁성과 대신들의 가옥, 국새보관

장소를 비롯한 중요한 지점마다에 무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았다.

(《조선주차군력사》 1967년판 279페이지

《나의 70년은 말한다》 1935년판

224-225페이지)

이처럼 서울을 무력으로 완전히 가로타고앉은 다음 11월 15일 이또는 황제 고종을 만나 《을사조약》 교섭을 위한 《회담》을 벌렸다.

이날 이또는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조약》 초안을 내놓고 이것은 《조금도 변경할 여지가 없는 확정안》이기때문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자체로 결심한바가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33권 제1책 502페이지)

이날 하야시공사와 하세가와사령관역시 저들대로 리조 봉건정부의 대신들을 만나 《을사조약》 체결에 응해나설것을 강요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이러한 강도적행위는 그후 16일과 17일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당시 황제 고종과 각부의 대신들은 일제의 부당

한 요구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때문에 그것을 매우 심중히 대하였다. 그리고 17일 오후 고종의 참석하에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끝에 《조약》체결을 반대하기로 일치가결하였다.

(《고종태황제실록》 권지 46, 516 페이지)

바로 이 소식에 접한 이또는 즉시 하세가와와 함께 그 수하 군대와 헌병을 끌고 왕궁을 불의에 습격하였다. 그리고 《어전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들을 군대와 헌병을 동원하여 잡아들이고 궁전회의실에 억류한 다음 그 무슨 《대신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때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대신들은 이또가 강요한 《조약》체결문제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또는 각부대신들을 하나하나 지명해가면서 《조약》의 찬부를 따지고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붓을 들고 《조약》초안을 침삭하면서 《합의》되지도 않은 《조약》을 이미 《합의》된것으로 우겨댔다.

《을사조약》조작에서 일제의 무력적강제와 협박은 그 《조인》단계에서 더욱 로골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약체결에서 조인은 이미 합의된 조약문이 최종적으로 정본이라는것을 공식인정하는 법률형식으로

써 그것을 조약문에 서명하는 의식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런데 《을사조약》은 그 서명의식자체가 무력적강제와 협박에 의하여 감행되었을뿐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하였다.

당시 황제 고종은 병을 구실로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을사조약》의 조인권은 참정대신 한규설에게 있는 셈이었다.

한규설은 이날 회의장에서 이또의 거듭되는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할수도 없으며 또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자 이또는 한규설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조약》을 《조인》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하고 군대와 헌병을 풀어 그를 《회담》장밖으로 끌어내다가 감금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련이어 군대와 헌병, 공사관 무리들을 동원하여 외부의 관인을 강탈한 다음 《을사조약》문서에 외부대신 박제순의 이름과 그의 관인을 박아놓았다.

(《대한계년사》 권 7 광무 9년 을사)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서울주재 독일대리공사 폰 잘데론이 자기 나라 황제에게 보낸 《정치보고서》자료에 의

하여 더욱 확증된다.

《을사조약》은 이처럼 그 발기와 《교섭》, 《조인》에 이르는 전과정이 리조봉전국가와 대신들에 대한 일제의 횡포한 무력적강제와 협박으로 일관되었다.

여기에 《을사조약》이 불법무효한것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그 근거는 둘째로 《을사조약》을 나라의 최고주권자들이 비준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조약에 대한 비준은 조인된 조약문서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법률형식으로써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은 조약이 비준되어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때문이다.

력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조약의 비준은 국가수반이 직접 하였으며 그러한 법률행위는 국내법에 준하는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로 되어왔다.

당시 구조선법이나 일본법에는 조약의 비준권은 나라의 최고주권자인 황제에게 있으며, 그가 직접 《조약비준서》에 《서명하고 국새를 찍는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현행한국법전》전 1910년판 9-29페이지

《신집 6법전서》소화 17년판 99페이지)

《을사조약》은 《대한국국 제》 제 9 조, 일본헌법 제 4 조와 13 조에 비추어보아도 불법무효이다. 그것은 이 《조약》에 나라의 최고주권자들인 고종황제나 명치천황의 비준이 없기때문이다.

당시 황제 고종은 애당초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기때문에 11월 25일 이또와의 《회담》석상에서 차라리 《순국》할지언정 조약은 《승인할수 없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황성신문》 광무 9년 11월 20일)

《을사조약》에 대한 고종의 이러한 립장은 그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1907년 7월 일제의 사촉밑에 친일파대신들이 이제라도 《을사조약》에 옥새를 찍을것》을 강요하였을 때 황제의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조약》에 끝내 비준하지 않은 사실이 잘 보여준다. (《황성신문》 광무 11년 7월 19일)

《을사조약》에 비준이 없다는 사실은 또한 황제 고종이 렬강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비밀전보와 친서내용이 확증하여준다.

고종은 《을사조약》이 조작공포된 직후인 1905년

1 1월말 미국인 헐버트와 프랑스주재 공사 민영찬에게 보낸 비밀 전보에서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아래 최근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의병으로부터 3.1운동으로》 1972년판 82페이지)

여기에서 고종이 말하는 《동의》란 곧 《비준》을 말하는것이다.

지난 6월 미국 콜럼비아대학 도서관에서는 1906년 6월 22일 황제 고종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나라 령장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가 새로 발견되였다. 바로 이 친서에서 고종은 자기가 말하고저하는것은 어떤 경우에도 《조약》을 승인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라고 하면서 만일 어떤 나라가 《짐이 이 조약을 응낙》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지도 듣지도 말고 그것이 근거없는 일임을 알아주기 바랍니다.》라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동아일보》 1993년 10월 24일)

그후에도 고종은 미국, 로씨야 등 4개국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특사들을 통

하여 《을사조약》에 《국새를 찍지 않았다》는것을 거듭 선언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6일

《평화회의소식》 1907년 7월 5일)

이밖에도 《을사조약》에 고종의 비준이 없다는것은 1984년 2월초 일본외무성산하의 외교사료관에서 《을사조약》에는 《량국 황제의 비준서가 없다는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1992년 5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구조약문서들가운데서 그 비준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에 의하여 더욱 확증된다.

(《동아일보》 1984년 2월 8일,

1992년 5월 13일)

1905년 《을사조약》은 이처럼 그 《조인》당시에는 물론 그후에도 고종황제와 명치천황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이였다. 여기에 또한 《을사조약》이 불법무효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이와 같이 1905년 《을사조약》은 일제침략자들이 무력적강제와 협박의 방법으로 조작공포한것일뿐아니라 그것마저 나라의 최고주권자들의 비준을 받지 못한것으로써 당초에 체결되지도 않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미 1963년 유엔의 국제  
법위원회에서도 《을사조약》의 강제성과 함께 그 무효를  
선언한 것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당초에 불법무효한 허위문  
서라는 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을사조약》을 근거로 삼아  
조선을 강점하고 련이어 조작공포한 《정미 7 조약》이나  
《합병조약》 그리고 각종 《법》 《지령》 문서들도 근원  
적으로 불법무효이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  
통치의 비법성을 묻어둔 채 1965년 남조선과 일본사이  
에 체결한 《조약》 역시 비법이며 그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력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  
이 조선인민앞에 죄악에 찬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성근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  
론과 법앞에서 규탄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